

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

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는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로서 동법 제 22 조에 의거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관리신용정보의 종류 : 개인, 기업 및 법인신용정보

- 가. 식별정보 나. 신용거래정보 다. 연체·신용질서문란정보
- 라. 신용능력정보 마. 공공기록정보

2. 관리신용정보의 이용목적

- 가.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
- 나.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
- 다. 채권추심, 인·허가
- 라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3. 관리신용정보의 제공대상

- 가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
- 나. 신용정보제공이용자, 신용정보업자, 신용정보집중기관

4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
가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 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라. 손해배상청구권

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기타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-4 한국기업평가(주) 경영기획실

Tel : 02) 368-5465 Fax : 02) 368-5694